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26716, 2017가합7335(병합)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배당이의]

전 문

- 원 고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변론 종결 무변론(피고 1, 2에 대하여) 2017. 5. 19.(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10,228,115원 및 그중309,028,175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6.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18,722,889원을 삭제하고,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에게 318,722,889원을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D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B과 피고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F'라고 한다)와 F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내용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13. 9. 17.	190,000,000	2014. 9. 17.
2	2013. 9. 17.	114,000,000	2014. 9. 17.

2) F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F의 공동대표이사인 A, 피고 D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F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F는 2014. 9. 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4. 9. 17.에서 2015. 9. 17.로, 2015. 8. 2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5. 9. 17.에서 2016. 9. 13.로 각 연장하였다(A, 피고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장래 보증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F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9.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1. 19. 우리은행으로부터 F의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한 신용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F를 대위하여 2016. 5. 4. 309,028,175원(원금304,000,000원 + 이자 5,028,175)을 우리은행에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비용으로 2,519,200원을 지출하고, 그중 1,319,260원을 회수하여 1,199,940원이 남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A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2015. 3. 2. 피고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원씨티에스'라고한다)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1천만 원의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5억2,440만 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A의 파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00236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변호사 B이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이하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대원씨티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2016가합526716)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16. 10.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11. 8. 8억250만 원에 매각결정되었으며, 집행법원은 2017. 2. 2. 실제 배당할 금액을 796,220,481원으로 결정하여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145,880원,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476,351,712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대원씨티에스에게 318,722,88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 파산관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A의 피고 대원씨티에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대원씨티에스의 배당액318,722,88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2.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2017가합7335)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F, D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대원씨티에스 : 갑제1 내지 13호증, 갑나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와 D는 연대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10,228,115원(= 대위변제금 309,028,175원 + 대지급금 1,199,9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309,028,1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인2016. 6. 8.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갑제8 내지 12호증, 갑나제1 내지 3호증, 을다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12.경을 전후로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억7500만 원인 반면 A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총 1,438,057,183원으로 A은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원) ¹⁾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대출	14,300,000
2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보증채무	20,000,000
3	주식회사 우리은행	보증채무	320,000,000
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등	456,000,000
5	주식회사 신한은행	보증채무 등	109,433,883
6	피고 대원씨티에스	연대채무	518,323,300
합 계			1,438,057,183

2) 위와 같은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대원씨티에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A의 행위는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A은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담보를 제공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 대원씨티에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A이 피고 대원씨티에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원씨티에스는 원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고의부인'에 대하여는 특정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이른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그 성립요건이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제도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파산절차에서 특정채권자의 이익이 아닌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처우를 위하여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전속적으로 당해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대원씨티에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피고 대원씨티에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제다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원씨티에스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대원씨티에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나(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반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은 부인의 소뿐만 아니라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도 행사가 가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참조), 부인권 행사로 인한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부인권 행사 시로 봄이 타당하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과 피고 대원씨티에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의 이사건 2016.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대원씨티에스에게 도달한 2016. 10.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802,500,000원²⁾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76,351,712원을 공제한 잔액 326,148,288원(= 802,500,000원 - 476,351,712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 파산관재인이 구하는 318,722,889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대원씨티에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집행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 대원씨티에스의 배당액 318,722,889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배당표 중피고 대원씨티에스에 대한 배당액 318,722,889원을 삭제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318,722,88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F,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파산관재인의 피고 대원씨티에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윤지영, 판사 김대현

1) 갑나제1, 2호증의 A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2016. 3. 9. 기준 채무내역을 기초로 하여, 2015. 3. 12. 이전 발생한 채무액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2016.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 매각대금으로 2016. 10. 25. 당시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